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 론 | 2.3 대학도서관 관련 대학교육 법규의 변화 |
| 2.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 | 3.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발의 및 제정 과정 |
| 2.1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 4.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 |
| 2.2 대학도서관 관련 도서관 법규의 변화 | 5. 결 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중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의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academic libraries as the core facility which help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knowledge resources for universities in Korea. The present 'Library Law' largely focuses on public librar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deals with academic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in a very limited sen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cademic libraries a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roposing and legislating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analyzed. Finally, how to proceed to actually legislate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경영, 대학도서관진흥법

Academic Libraries, Library Law, Library Management, Library Promotion Act

* 이 논문은 2010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145-162, 2011. [DOI:10.4275/KSLIS.2011.45.2.145]

1. 서론

최근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지위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국가 인적 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대의 리더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학도서관을 고등교육기관의 핵심적인 학술 및 연구정보 기반 시설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여,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만 아니라 도서관 관련 전문직단체, 유관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4년 3월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학술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시설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강구해오고 있다(곽동철 2006a).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아직도 공부방이나 일반열람실 중심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거나 관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그동안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유통 등의 측면에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로서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의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로서 도서관과 관련하여 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된 법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특성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법제의 정비가 대학도서관계에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진흥법도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대학도서관 운영 환경을 활성화시켜,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

2.1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는 통치시기별 도서관정책과 함께 도서관법의 제·개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선 통치시기별 도서관정책과 도서관법 제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이병목 2005).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역

대 통치시기별로 주요한 도서관 정책 사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곽병희, 곽동철, 김성중, 김종철 2009).

첫째, 제1-2공화국 시기(1948~1961)로 광복이후 도서관 업무는 미군정청 학무국내 문화과에서 담당하다가 1946년 3월 학무국이 군정법령 제64호에 의해 문교부로 승격됨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도서관업무는 문화국 성인교육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박물관·도서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 직제에는 도서관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표 1>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 내역 시대별 | 도서관 정책 | 도서관 관련 법규 | 도서관법 관련 주요사항 |
|------------------------|--|---------------------------|---|
| 제1-2공화국 (1948-1961) | - 미군정청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 도서관업무 '문화국 성인교육과' | 관련법규 없음 | 정부수립 직제에 도서관 정책 전담 부서 없음 |
| 제3-4공화국 (1961-1981) | - 문교재건 5개년계획 수립 - 교육자치제 부활('64),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 관할 부서 이원화 | 도서관법 제정('63), 동법 시행령('65) | - 전문 4장: 총칙, 공공/학교 도서관, 벌칙 |
| 제5공화국 (1981-1988) | - 80년대 문화정책 발표('81) -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도서관법 개정, 시설과 장서 확충 등 도서관 발전방안 당 정책사업으로 확정('83) | 도서관법 개정('87) | - 전문 7장: 대학/전문/특수 도서관, 도서관정보 협력망 추가 |
| 제6공화국 (1988-1993) | - 정부조직법 개편 문화부 탄생('90)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부 이관('91) - 도서관 전담부서: 교육부 사회교육과 → 문화부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진흥법 제정('91) | - 전문 8장: 보칙 추가 |
| 문민정부 (1993-1998) | -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 문화체육부로 개편 -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 통합,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 IMF('97.12)로 조직구조조정 실시 |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정('94) | - 전문 10장: 문고, 독서 진흥 추가 |
| 국민의정부 (1998-2003) | -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수립('00)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02) -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02) | " | " |
| 참여정부 (2003-2008) | - 도서관박물관과 폐지('04) 문화정책팀과 국립중앙도서관 이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07)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07) | 도서관법 전부 개정('06) | - 전문 9장: 도서관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정보격차 해소 추가 - 도서관협력망, 독서진흥 삭제 |

둘째, 제3-4공화국 시기(1961~1981)로 문교부는 '문교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교육을 재차 실시하였으며, 1964년 1월에는 교육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와 문교부로 이원화되었다. 제3공화국 시기에 도서관계의 가장 큰 정책은 1963년 10월 도서관법의 제정과 1965년 3월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도서관정책이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권영찬 2000).

셋째, 제5공화국 시기(1981~1988)로 1981년 6월 문화공보부는 제5공화국의 '80년대 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서 "군단위에 1개의 도서관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여 소규모 지역사회도서관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3월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도서관전담부서 설치, 도서관법개정, 시설 및 장서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서관 발전방안을 당의 정책 사업으로 확정하였다(서혜란 1992).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11월 도서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넷째, 제6공화국 시기(1988~1993)로 1990년 1월 노태우대통령은 문화정책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90년 1월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로 문화부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3월 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교육부 소속 기관이었던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 및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부 사회교육과'에서 '문화부 도서관정책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제6공화국은 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 문화부내

도서관 전담부서 신설로 외형상 크게 발전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이원화로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권영찬 2000).

다섯째, 문민정부(1993~1998) 시기로 1993년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으며, 1994년 12월 문화체육부 및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책과'가 '박물관과'와 통합하여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또한 1994년 7월 문고와 독서 지원을 포함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공포되었다. 특히 1997년 12월 몰아닥친 IMF는 사회 제반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도서관계에도 예외 없이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 예산축소 등의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정동열 2004).

여섯째, 국민의 정부(1998~2003) 시기로 1999년 말에 건국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도서관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2년 8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2002년 11월에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조현양, 이재원 2005). 이처럼 도서관정책이 활성화되는 이면에는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으며,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곱째, 참여정부(2003~2008)의 도서관정책은 국민의 정부 때 도서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되나(이용훈 2004), 도서관의 행정조직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참여정부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안에 ‘도서관박물관과’의 폐지가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고, 소관 업무 가운데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법인관련 업무는 문화정책팀으로 이관되고, 그 외 도서관 정책 관련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2006년 10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한국도서관협회 200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2007년 6월 새로운 도서관법 시행에 따라 도서관정책에 관

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출범하였다(김세훈 2007). 그 산하에는 문화관광부내에 도서관 전담부서가 폐지된 후 2년여 만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2과 1팀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2.2 대학도서관 관련 도서관 법규의 변화

우리나라 도서관 관계 법규는 도서관 정책의 변화에 따라 1963년 10월에 최초로 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에 현행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관계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정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곽병희, 곽동철, 김성중, 김종철 2009). 일반적으로 법규라고 하는 사회적

<표 2> 도서관 관계 법규 변화의 영향요인

| 도서관법 | 영향 요인 | 비고 |
|-----------------------|--|-------------------------|
| 도서관법('63.10) | •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도서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 역할의 필요성 대두 | |
| 도서관법 전부개정('87.11) | • 도서관의 개념을 기존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인 기능수행으로 도서관의 개념 확대 •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제도 개선의 요구 대두 | |
| 도서관진흥법 제정('91.3) | • 도서관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신장 요구 •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 이용과 유통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 요구 |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94.3) | •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의 시설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의 요구 • 독서기회 확대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구 | |
| 도서관법 전부개정('06.10) | • 국가 지식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문화체험·학습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요청 • 지식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 요구 •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틀의 구축 필요성 대두 | 기존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법함. |

제도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수단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역학관계가 반영되고 조정되는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김세훈 등 2007). 마찬가지로 도서관법의 변천과정 역시 각 시기별 도서관정책이 반영된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 개정 도서관법 등으로 변모하면서 도서관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련 법규도 전술한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그 변천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미흡하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내용은 도서관법 관련 조항의 변화와 대학교육 관련 법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법 관련 조항의 변화는 그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나타났다. 1963년 10월 도서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대학도서관은 독립된 관종으로 정의되지 못하였고, 제3장 학교

도서관 관련 제25조(설치) 및 제26조(직원), 제27조(일반의 이용에의 제공)에 대학도서관 관련 조항을 두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87년 11월 도서관법의 전면개정으로 <표 3>과 같이 대학도서관이 독립된 관종으로 설정되면서 제4장에 대학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였다(곽병희, 곽동철, 김성중, 김종철 2009).

또한 동법 제2조(정의)에서 대학도서관을 정의하고, 제3조(관종)에서 대학도서관을 이전법의 학교도서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관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제4장 제32조(설치)에는 대학도서관 설치 의무를, 제33조(업무)에는 대학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34조(지도·감독)에는 대학도서관이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동법 시행령(1988년 8월) 제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별표 1]에서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과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을 따

<표 3> 대학도서관 관련 도서관법의 변화

| | 도서관법(1987) | 도서관진흥법(1991)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 | 도서관법(2006) |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
| | 제3조(도서관의 종류) | 제3조(도서관의 종류) | 제3조(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 | 제3조(적용범위) | |
| | 제4조(전문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 제4조(대학도서관 등의 이용제공) | 제4조(대학도서관 등의 이용제공)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제5조(대학도서관 등 이용제공) | 제5조(도서관시설·자료) | 제5조(도서관 및 문고 시설·자료) | 제5조(도서관 시설·자료) | |
| | 제6조(도서관 시설·자료) | 제6조(사서직원 등) | 제6조(사서직원 등) | 제6조(사서직원 등) | |
| | 제7조(사서직원 등) | 제7조(문화시설과 협력) | 제7조(문화시설과 협력) |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 |
| 제4장 대학 도서관 | 제32조(설치) | 제31조(설치) | 제31조(설치) | 제5장 대학 도서관 | 제34조(설치) |
| | 제33조(업무) | 제32조(업무) | 제32조(업무) | | 제35조(업무) |
| | 제34조(지도·감독) | 제33조(지도·감독) | 제33조(지도·감독) | 제36조(지도·감독) | |

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별표 2]에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1991년 3월 제정된 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와 제3조(도서관의 종류)에서도 대학도서관을 독립된 관종으로 제시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별표 1]과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별표 2]에서 공공 및 전문도서관의 시설, 자료,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제시하였으나,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의 [별표 2]에서 “대학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이전 도서관법시행령(1988. 8)에서 제시한 사서배치기준 관련사항이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이후 별도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1988년 8월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한윤옥, 김환식, 정현태 2005).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골격은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이전 법의 체제를 거의 답습하고 있어 변화가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도 이전 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2006년 10월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제6조(사서직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제4조(사서직원 등)의 [별표 1], [별표 2]에서 공공 및 전문도서관의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였으나 대학도서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법 제12조 2항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수립·심의·조정사항중의 하나로 제7호에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수립·심의·조정사항)에서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 제5호에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별도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88년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하여 오다가 1996년 7월 동 기준령이 폐지되었고, 그 근거규정이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대체되어 대학도서관 관련 시설 및 자료기준은 동 규정 제4조(교사) [별표 2], [별표 3]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

2.3 대학도서관 관련 대학교육 법규의 변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표 4>에서와 같이 도서관 관련 법규와 함께 대학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곽병희,

〈표 4〉 대학교육 관련 법규의 변화

| 연 도 | 도서관 관련 법규 | 연 도 | 교육 관련 법규 |
|---------|-------------|---------|--------------|
| | | 1955.08 | 대학설치기준령 제정 |
| 1963.10 | 도서관법 제정 | 1963.06 | 사립학교법 제정 |
| | | 1978.07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정 |
| 1987.11 | 도서관법 전면 개정 | 1986.05 | 학교법인정관준칙 제정 |
| 1991.03 | 도서관진흥법 제정 | | |
| 1994.03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1996.07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
| | | 1997.12 | 고등교육법 제정 |
| 2006.10 | 도서관법 전면 개정 | | |

곽동철, 김성중, 김종철 2009).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 8월 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준거법령으로 적용되었다. 즉, 동령 제8조(교사)에서는 도서관을 지원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제12조(도서관 등)에서는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을 규정하였다. 그 후 1996년 7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이 폐지되면서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관련 준거조항이 사라졌고, 이를 대체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기준에서 공간기준만을 규정함으로써 시설과 자료운영에 관한 준거지침이 삭제되었다.

1986년 5월 제정된 ‘학교법인정관준칙’은 사립대학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의 조직과 직원 운영 부분의 준거법령으로 적용되었다. 그 후 2005년 5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의 자율운영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변화를 모색하던 중 ‘학교법인정관준칙’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도서관계에서는, 준거법령의 폐지로 인해 조직과 직원 및 시설 운영에서 다소 부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1996년 7월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현재 교육 관련 법령 중 유일하게 대학도서관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2003년 3월 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의 제4조(교사) [별표 2]의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도서관을 기존의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하였다. 이는 2003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법규에 비해 대학도서관의 대학 내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동 규정 제4조 제3항 [별표 3]에서는 시설의 공간기준을 학문분야별로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이용자와 장서, 각종 시설을 함께 고려한 법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학교 설립 등)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대해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규라고 하겠다.

3.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발의 및 제정 과정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보면, 해방 이후 초기에는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을 도서관법보다는 대학교육 관련 법규에서 강조하였다. 하지만, 차츰 도서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상기 두 곳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즉,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함께 선진국에서와 같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대학도서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들(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자 다각적인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8월 발행·배포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을 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과제로 채택되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a). 또한 2008년 12월 발행·배포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도 과제번호(5-2-1)의 대학도서관 정책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4가지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확정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b).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한국대학도서관연합

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해 「대학도서관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2009년 2월 25일 국회에서 정두언의원이 동료의원 21명을 대표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였다. 이렇게 발의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한 법으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이 2007년 12월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관련법만 미 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됨에도 정부 및 대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이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로 교양도서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동도서 등 지역주민의 흥미 위주의 자료에 치중되어 있어 일반 성인의 전문적 자료를 이용할 접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5년마다 대학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며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센터 구축 지원 및 주기적인 평가 실시 등으로 대학도서관을 진

흥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를 도모하고자 함.”

이러한 제안이유를 제시하며 발의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모두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각 조별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서 교육 및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본시설인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조별 내용들은 제3조(설치), 제4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대학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제9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1조(재정지원 지표로 활용),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3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제15조(시설 및 설비), 제16조(사서직원 등), 제17조(도서관 자료), 제18조(학술정보서비스), 제19조(이용자교육), 제20조(대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제21조(학술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 제22조(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금전 등의 기부), 제25조(지도감독)를 포함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수정되는 정도의 과정을 거쳐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 16개 부처에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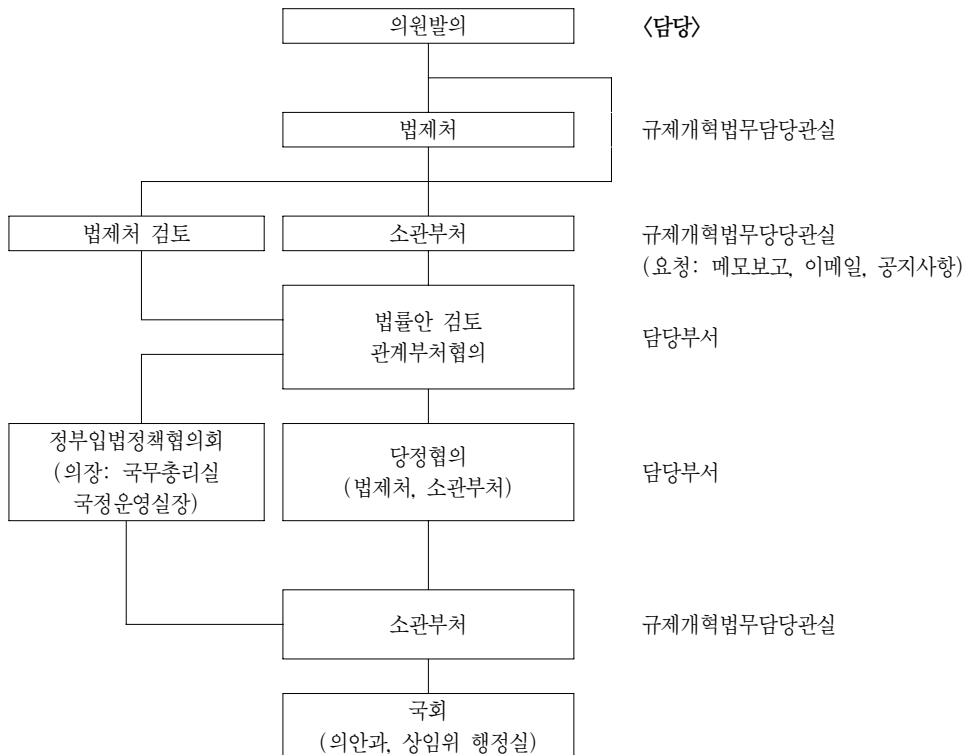
부처(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극히 일부 내용의 수정 의견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뜻하지 않게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전술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하였던 ‘도서관발전계획(2009-2013)’과 그 시행계획의 내용과 모순되는 의견과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상기 3개 부처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뜻밖의 의견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이 늦추어졌다. 그 후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다각적인 논의와 <표 5>의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법안의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법규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향후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이나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규 제정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림 1>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과정의 절차 가운데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 검토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2월 25일 정두언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법규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은 ‘법률안 검토 관계 부처

〈표 5〉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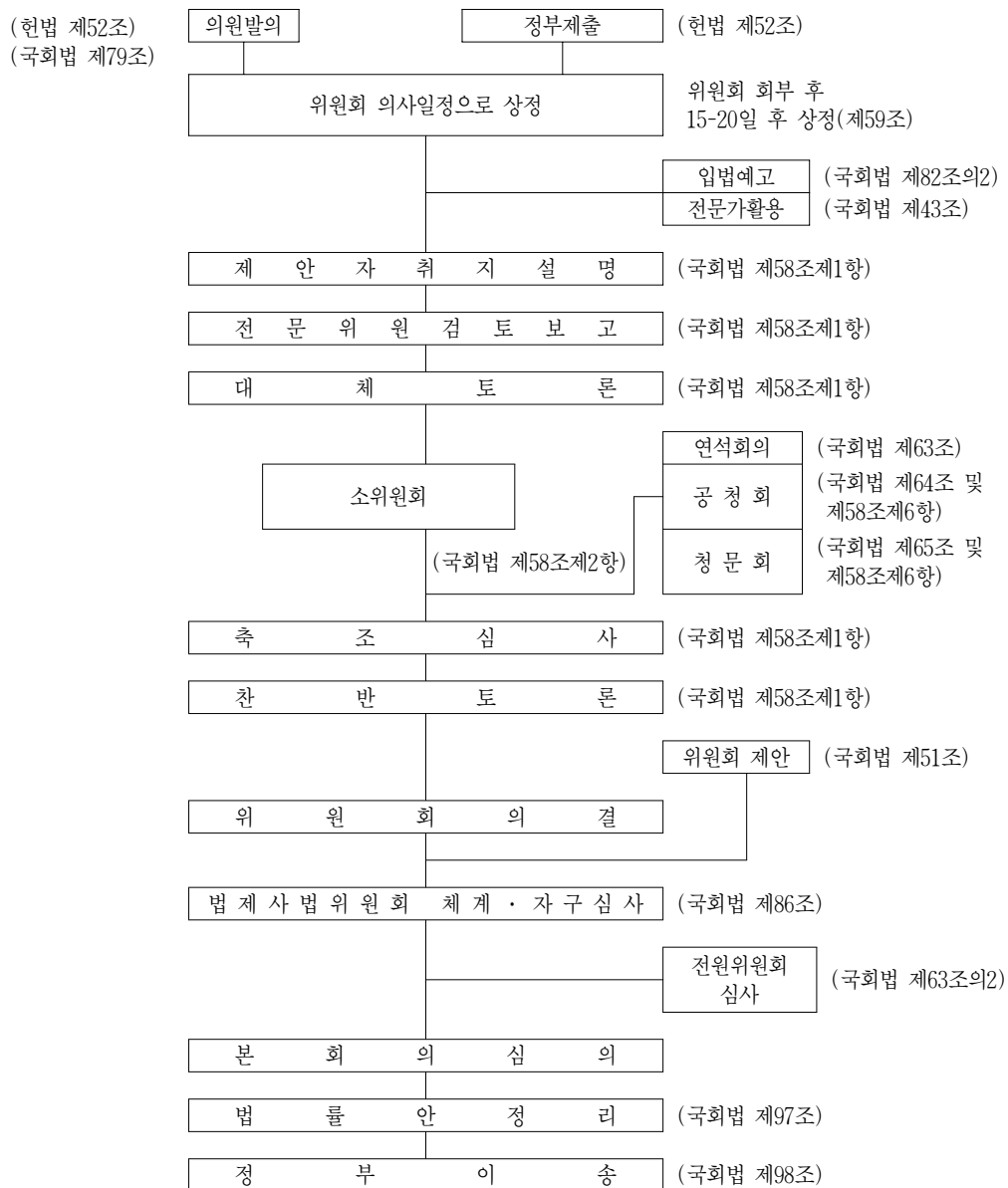
| 주요 쟁점내용 | 검토의견 |
|--|--|
| <p>〈문화부 법률 제정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법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반대 | <p>〈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 개정 시('06.10) 도서관 종류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07년 12월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08.7)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채택하였으며, 도서관법 제15조에 의하여 수립한 '09년도 시행계획('08.12)에 교과부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도록 확정·발표하였음. |
| <p>〈삭제〉</p> <p>제8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수용〉</p> <p>〈타부처 의견: 행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으므로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는 법령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정부조직법 제4조) |
| <p>〈삭제〉</p> <p>제9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p> | <p>〈수용〉</p> <p>〈타부처 의견: 법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의 규제에 해당 |



〈그림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정부 내 검토절차

협의'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그림 2>는 일반적인 법규 제정 과정으로서,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안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입법 과정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 제정 및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가 필수사항

<그림 2> 국회 입법 과정의 절차

4.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

지금 시점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일부 편견을 지닌 정부부처나 단체 및 기관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한 편견들은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 도서관계의 단결을 해치고 도서관계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진국들이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를 독립적으로 제정·시행하지 않으므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기본법인 도서관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기술하고,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시행이 도서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시행 때에도 동일하게 논리를 전개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도서관계의 발전에도 걸림돌 현상들이 나타났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실상 기우에 불과하였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 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기본법에서 세밀히 다루지 못한 관중별 도서관 관계 법규를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도서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도서관” 관련 법규의 통합법화나 개별법화는 도서관의 현황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법유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통합법화의 장점은 도서관 종류에 관계없이 도서관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도서관 관련 법률을 한데 묶어 다룸으로써 관리의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개별법화는 도서관의 유형별 주무부처에서 목적에 맞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법률에 담을 수 있다. 또한 개별법화는 정책 수단을 지닌 부처와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을 일치시킬 수 있고, 시대 상황에 부응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타 관종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규의 제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관중별 형평성 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필자가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최성근 교수와의 몇 차례 대담을 통해 정리한 도서관법과 별개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도서관법」은 형식적·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관종인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현행 「도서관법」은 제정 당시부터 나머지 관종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법으로 제

정할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각종 법규는 제정 당시의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단일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됨에 따라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다수의 개별법이 만들어지고(개별법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의 개별법이 다시 단일법으로 통합되는(통합법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 관련 법규로는 「도서관법」이 일반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회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지원법안'이나 '대학도서관진흥법안'도 일반법인 「도서관법」의 체계나 내용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입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 진흥 내용을 삽입하자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도서관법」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입법 체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하여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흥을 위한 실제적·절차적 사항들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넷째, '대학도서관진흥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나 정책홍보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외 대학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법률의 보완·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열악한 대학도서관의 현상을 타개하고자 추진 중인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다룬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은 대학도서관 관련 법률을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이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研究委員會 2003;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00, 2004, 2005). 이를테면,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중앙도서관 규모의 도서관들이 캠퍼스 내에 15~35개관씩 운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현상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별법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그동안 우리 정부도 2002년 11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의 추진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을 지식 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87년 도서관기본법에 대학도서관 항목이 독립된 관종으로 포함된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도서관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용상 변화가 없었다. 현행 도서관법 역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국가 학술정보유통의 핵심기반이자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주요한 특성과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준비를 선결해야 할 것이다(곽동철 2006a). 즉, 대학도서관계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대학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학도서관 진흥의 체계적 추진,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 강화, 대학도서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학술정보자원 공유와 협력체제 강화,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대학은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국가나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우수한 대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용원 2004; 逸村 裕, 竹内比呂也 2005).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 내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 11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이 대학사회의 연구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부서로서 소명을 다하기에는 제도적인 미비 문제가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는 현행 도서관법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수용하는 기본법 하에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특성인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서관법과 대학교육 관련법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관련 법규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학도서관이 국가 학술정보유통의 핵심기반이자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더욱이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대학도서관계의 노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대학도서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학도서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대학도서관 법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검증도 실시하여 왔다. 나아

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도 확정되어 공표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제는 도서관계가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06a.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25-246.
- [2] 광동철. 2006b.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41-164.
- [3] 광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3-28.
- [4] 광동철, 윤정옥, 광철완. 2007.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5] 광병희. 2002. 디지털 환경에서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9(4): 257-296.
- [6] 광병희, 광동철, 김성중, 김중철. 2009. 『대학도서관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7] 권영찬. 2000. 『해방이후 통치시대별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8] 김세훈, 박영정, 정정숙, 허운영. 2007. 『문화 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9] 김용원. 2004. 『도서관정보정책』. 황면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a.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b.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2] 이병목. 2005. 『도서관법규총람』. 서울: 구미무역.
- [13] 이용훈. 2004.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자율과 분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41(1): 31-41.

- [14] 정동열. 2004. 지식정보화시대의 도서관정책. 『국회도서관보』, 41(1): 6-15.
- [15] 조현양, 이재원. 2005.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15-132.
- [16]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1.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17] 한국도서관협회. 2006. 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서관문화』 47(10): 26-47.
- [18] 한윤옥, 김환식, 정현태. 2005.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9] 日本圖書館情報學會研究委員會 編. 2003. 『圖書館の經營評價』. 東京: 勉誠出版.
- [20] 逸村裕. 2005. 『變わりゆく大學圖書館』. 竹内比呂也 編. 東京: 勁草書房.
- [21] 岸田和明. 2004. 電子的な圖書館サービスの評價への取り組みとその課題. 『情報の科学と技術』, 54(4): 162-167.
- [22]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online]. <<http://www.ala.org/acrl/guides/college.html>>.
- [23]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5. "Guidelines for university library services to undergraduate students." [online]. <<http://www.ala.org/acrl/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html>>.
- [24]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4.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online]. <<http://www.ala.org/acrl/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2006a.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rategic development and the changes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225-246.
- [2] Kwack, Dong-Chul. 2006b.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road map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141-164.
- [3] Kwack, Dong-Chul, Kim, Ki-Tae, & Yoon, Cheong-Ok. 2006.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problems in academic libraries: Cases of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3-28.
- [4] Kwack, Dong-Chul., Yoon, Cheong-Ok, & Kwak, Chul-Wan. 2007. *Doseogwan Siseol, Jaryo*

- Mit Saseo Jikwon Baechi Gijune Gwanhan Yeongu*.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5] Kwak, Byeong-Heui. 2002. "A study on developing evaluation indicator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4): 257-296.
- [6] Kwak, Byeong-Heui, Kwack, Dong-Chul, Kim, Seng-Jung, & Kim, Jong-Cheol., 2009. *Daehak Doseogwan Hwangyeong Gaeseon mit Hwalseonghwareul wihan Jedojeok Giban Guchuke Gwanhan Yeongu*.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7] Gwon, Yeong-Chan. 2000. A Study on the Library Policies of Each of the Reigning Governments and Growth of Korean Public Library after Korean Liberation Day. M.A. thesis, Keimyung University.
- [8] Kim, Se-Hun, Park Yeong-Jeong, Jeong, Jeong-Suk, & Heo, Un-Yeong. 2007. *Munhwa Bunnya Beopje Jeongbi Banghyang Yeongu*.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9] Kim, Yong Won. 2004.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Tr. by Hwang Myu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0]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a. *Library Development Plan 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b. *Library Development Plan(2009-2013): 2009-nyeondo Sihaeng Gyehoeg*.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2] Lee, Byeong-Mok. 2005. *Korean Library Laws*. Seoul: Gumimuyeok.
- [13] Lee, Yong-Hun. 2004. "Chamnyeo jeongbuui doseogwan jeongchaek: Jayulgwa bungwonui sidaereul saragaya hal doseogwan."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41(1): 31-41.
- [14] Jeon, Dong-Yeol . 2004. "Jisik jeongbohwa sidaeui doseogwan jeongchaek."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41(1): 6-15.
- [15] Cho, Hyun-Yang & Lee, Jae-Won. 2005. "A study on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or library policy implement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4): 115-132.
- [16]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Association 4th Jeonggi Chonghoe Jaryojip*. Seoul: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17]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6. "Doseogwanbeop gaejeong gyeonggwa mit juyo naeyong." *Korean Library Association Journal*, 47(10): 26-47.
- [18] Han, Yoon-Ok, Kim, Hwhan-Sik, & Joung, Hyun-Tae. 2005. *Daehak Doseogwangwa Haggyo Doseogwan Gwanlyeon Beobreong Jeongbileul Wihan Gicho Yeongu*.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